**대 리 점 계 약 서**

한국법인으로서 주소가 [ 주소 기재 ] 인 [ 회사명 ](이하 “Company”)와 [ 국가명 ] 법인으로서 주소가 [ 주소 기재 ]인

[ 회사명 ](이하 “Agent”)간에 [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다.

제1조(대리점 지명)

① Company는 Agent를 아래에 명시된 제품(이하”제품”)의 판매를 위해 아래와 같은

지역(이하“판매지역”)의 ( ◎ 독점 ) ( ◎ 비독점 ) 대리점으로 지명한다. 아래의 제품과 판매지역은 당사자의 서면동의로 변경될 수 있다.

|  |  |  |
| --- | --- | --- |
| 품명 | 판매지역 | 비고 |
|  |  |  |

② Agent는 Company가 제조· 공급하는 제품과 경쟁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지역 내에서는 거래하지 못하며, 동 제품의 생산자나 공급자를 대표하지 못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Agent가 방문하거나 Agent에게 소개된 모든 고객은 Company의 고객이고 Agent의 고객이 아니며 또한, Agent는 고객이나 고객의 목록에 대하여 어떤 재산적 이익을 갖지 아니함을 당사자 쌍방은 명백히 합의하고 선언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 ] 유효하다. 단,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가 2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가격 및 판매)

① Company는 제품이 판매될 최저가격을 Agent에게 수시로 제공하고, Agent는 가격변동에 관한 Company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최저가격 이하로 제품에 대한 판매제의를 하거나 구매주문을 유치할 수 없으며, 각 경우마다 가능한 최상의 가격을 받도록 노력한다.

② Agent는 Company의 사전 동의 없이는 판매지역 밖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③ Agent는 Company가 신용제공이나 거래를 금지한 자에게는 신용을 제공하거나 거래를 할 수 없다.

④ Agent는 Company에게 지역 내의 제품시장상황, 경쟁자의 활동이나 가격을 수시로 제공하고, 제품판매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가용정보를 제공한다. Agent는, 본 계약 중 또는 그 이후에, Agent가 발주 및 판매를 촉진하는 제품의 판매권에 대한 수령, 회수, 소송청구에 Company가 요청하는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4조(발주)

① Agent는 판매지역 내외를 불문하고 자신이 수취하는 제품관련 조회요청이나 주문내역을 즉시 Company에게 통지하고, 제품의 발주서를 받은 즉시 동 발주서를 Company에게 전달한다.

② Agent는 Company가 동 조회요청이나 발주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제품주문서에 대한 승낙을 고객에게 직접 전달한다. Company는 제품이 판매지역으로 인도되는 경우, Agent에게 제품과 같이 고객에게 송부된 청구서의 사본을 송부하고, 또한 고객으로부터 대금이 지급되었을 때 수시로 그 내역을 통보한다.

③ Agent는 그 수취한 발주 내역을 유지하고 매월 [ ] 일 이전에 직전 월의 발주 내역 사본을 Company에게 제공한다.

제5조(대금지급)

① Agent는 고객으로 하여금 합의된 제품대금 및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Company가 Agent에게 지급할 수수료의 합계액을 금액으로 하는 취소불능신용장을 Company를 수혜자로 하여 일류 국제은행에 개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객이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거나 개설하지 않을 경우, Agent는 Company를 수혜자로 하여 위 명시된 동액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Agent는 동 금액을 고객으로부터 상환받는다.

② Agent는 Company의 서면동의 및 수권 없이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수 없다.

제6조(사무실 및 직원)

Agent는 본 계약상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을 채용· 유치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Agent가 부담한다.

제7조(비밀유지)

Agent는 본 계약상 Agent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Company가 Agent에게 공개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그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Agent는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Agent는 제품이나 Company에 관해, Company가 Agent에게 제공한 모든 정보나 출판물, 가격표, 샘플, 서류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즉시 Company에게 반환한다.

제8조(영업수행 관련 인허가)

Agent는 본 계약 하에서 Company를 위해 수행하기로 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요구되는 필요 신청이나 기타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

① Agent는 본 계약 중 일어난 본 계약 제1조 제1항의 제품판매에 대해 “순현금수령액”의 [ ] %를 수수료로 지급받는다. “순현금수령액”은 Company가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에서 세금, 관세, 운임, 보험 등 제반 부담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또한,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해 수수료액을 정하는 별도의 수수료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어느 특정 경우를 위해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수수료 계산을 위한 판매는 주문서가 발행된 고객의 주소 및 제품이 인도되는 장소 양자 모두 판매지역 내에 있지 않으면 판매지역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Agent가 전항에 규정된 수수료을 받은 권한이 있는 본 계약상 Company의 제품판매는 다음에 국한된다.

(a) 발주서나 조회요청을 Company가 직접 접수하거나 Agent를 통해서 받거나를 불문하고, 발주서나 조회요청이 유래한 고객의 주소가 판매지역 내에 있고 Company가 제품을 발주서나 조회요청에 따라 판매지역 내의 장소로 인도하는 경우의 Company의 제품판매

(b) 위(a)항에 기술되지 않은 Company의 제품판매로서, Agent가 Company에게 1차 제공한 발주서나 조회요청에 따라 Company가 제품을 판매지역 내의 지점에 인도하거나 발주서 및 조회요청이 유래한 고객의 주소가 판매지역 내에 있는 경우

③ 본조에 규정되고 지급되는 수수료은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Agent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나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④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Agent는, Company가 종료일까지 수취한 발주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을 수취할 권한이 있다.

제10조(최소판매량)

Agent는 판매지역 내의 고객이나 구매자로부터 발주나 조회요청을 받아 판매지역 내의 제품출하가 최소한 다음과 같도록 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계약년도 | 기간 | 구매량 | 가격 |
| ◎ | 제1차 계약년도 | 년 월 일 |  |  |
| ◎ | 제2차 계약년도 | 년 월 일 |  |  |
| ◎ | 제3차 계약년도 | 년 월 일 |  |  |

제11조(상표)(상호 및 지식재산권)

① 본 계약의 어떤 규정도 Agent에게 Company의 상표나 상호에 대해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다만 Agent는 본 계약에 따라 제품의 주문이나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만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Agent는 제품 또는 제품과 관련된 모든 특허권, 상표, 상호, 저작권 기타 재산권은 오직 Company나 그 계열사의 재산임에 동의한다. Agent는 판매지역 내에서 제3자가 특허, 상표, 상호, 저작권 기타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Company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Agent는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Company의 동의가 없는 한 Company의 상표나 상호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광고)

① Agent는 그 비용으로 광고를 게시하고, 판촉물을 분배하며, 지역 내의 제품 관련 판매 및 기타 선전을 해야 한다. 단, 그 내용은 먼저 Company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Agent는 Company가 광고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Company의 합리적인 광고변경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Agent의 요청이 있는 경우, Company는 수시로 발행하는 제품 관련 카탈로그나 광고물을 적정한 수량 Agent에게 제공한다. 다만, 사유여하를 불문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Agent는 Company가 제공한 이러한 카탈로그나 광고물을 모두 Company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13조(재고유지)

Agent는 언제든지 잠재고객에게 샘플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적정재고를 유지하기로 한다.

제14조(대리점의 지위)

① 본 계약의 어떤 규정도 Agent에게 제품과 관련하여 Company를 위하여 분쟁이나 클레임에 대해 협상하고, 해결하며 화해할 권한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

② Agent는 Company가 서면에 의하여 명백히 수권하는 경우 외에는 제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실진술이나 보장을 할 권리가 없음에 동의 한다.

③ 본 계약은 Agent에게 일신전속적이고, Agent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처분, 담보제공, 기타 부담지울 수 없다.

④ Agent는 Agent의 행위 및 사업으로부터 발생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제3자가 입은 신체적 ․ 재산적 손해의 클레임, 청구, 기타 소송으로부터 Company를 면책시키고 보호해야 한다.

제15조(계약해지)

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Company는 [ ] 일 전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Agent가 파산한 경우

(b) Agent가 화의하거나 채권자와 화해하는 경우

(c) Agent가 그 재산에 압류기타의 처분을 받은 경우

(d) Agent가 제10조의 최소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Company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e) Agent가 본 계약 조건 중 Agent가 이행할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 하자 치유통지를 받고도 이를 치유하지 않은 경우

(f) Com pany가 Agent의 의무이행이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는 사태가 일어난 경우

② Agent가 Company의 귀책 없는 사유로 제10조의 최소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Company는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최소판매량 미달성으로 인한 명시적· 묵시적 판매기회의 상실 등 모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다만, 양 당사자는 Agent의 최소판매량 미달로 인한 손해의 산정이 매우 어려운 점은 인정하여, 일시금 US $ [ ] 을 손해배상액(합의배상액)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적용법 및 중재)

① 본 계약은 [ ] 법의 적용 · 해석을 받는다.

② 본 계약 및 그 불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관련 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

제17조(기타규정)

① 본 계약은 본건 사안에 관해 Company와 Agent 간의 모든 합의를 포함한다.

② 본 계약의 변경 및 수정은 본 계약일 이후에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③ 계약상의 권리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일방당사자가 어느 때에 타방 당사자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후에 타 의무의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계약조항 위반을 한번 용인하였다고 하여 동 조항 위반의 계속적 묵인이나 동 조항의 변경 ·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④ 이 계약서는 영어와 기타의 다른 언어로 작성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 간에 차이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문 계약서가 모든 면에서 우선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본 계약체결의 수권을 받은 임원이 서명하게 한다.

Company Agent

당사자명 [ ] [ ]

주 소 [ ] [ ]

대표자명 [ ] [ ]

서 명